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이 서 영



법제교류 연구 13-21-⑧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이 서 영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Product Liability Law in Taiwan and Singapore

연구자 : 이서영(부연구위원)
Lee, Seo-Young

2013.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도 소비자 의식이 높은 편으로, 비교적 일찍 제조물책임 개념을 도입·법제화시켰음
- 우리나라가 대만과 싱가포르에 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은 빈번하게 결함이 발생하는 품목들이나 이들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임
- 본 연구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조와 주요내용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내용

-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는 「소비자보호법」, 「민법」상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계약책임에 근거함
- 「소비자보호법」은 상품(부동산, 동산)과 서비스에 대하여 설계자,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법」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또는 판매 및 제공 당시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소비자에게 위협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고와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이기 쉽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함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제3자를 보호함
- 「소비자보호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제조물의 결함, 피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가짐
- 이에 비하여 불법행위상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설계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며,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분쟁 시 원고(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일응의 추정), 제조물의 일반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하여 발생한 피해, 결함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해야 하고, 제조자는 자신의 주의의무 충족 여부를 항변함
- 품질보증책임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구매자는 제품의 매매계약서, 판매자에 의한 판매와 인도, 제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매 시 구매자의 결함 인지, 구매자의 점검의무 불이행, 구매자의 점검 후 결함에 대한 미통보는 면책사유가 됨
- 반면 계약책임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관계, 채무자(판매자)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구매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계약의무 불이행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는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가 주로 규제·감독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외 활동이 활발한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하여서 단체소송이 가능하나, 「소비자보호법」은 조정을 통한 소비자분쟁해결을 장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는 계약책임상 품질보증, 계약책임상 불공정거래에 의한 제조물책임, 그리고 불법행위에 근거함
 - 계약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에 관하여서는 「상품제공법(Supply of Goods Act, SGA)」,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SOGA)」과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에서 정하고 있음
 - SOGA는 ‘만족스러운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제공자의 품질보증책임 불이행에 근거하여 제공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구매자를 구제하며, 이때 구매자는 제공자와의 계약관계, 결합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결합에 대한 사전지식, 사전점검은 면책사유가 됨
 - CPFTA는 소비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공자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계약책임의 위반으로 제조물책임을 묻는데, 이때 구매자는 계약관계, 결합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30,000 싱가포르달러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CPFTA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레몬법 조항은 상품의 인도 후 6개월 이내에는 상품이 계약상 보증된 품질과의 불합치를 추정하도록 정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 범위를 넓힘

- 불법행위는 소비자가 제조품을 구매·사용하기 전 제조품을 충분히 살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제조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제조자에게 최종소비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지우며, 이때 소비자가 제조상의 결함, 제조자의 과실, 배상 가능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기여과실이나 위험감수는 면책사유가 됨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는 통상산업부의 소관이며, 민간 소비자단체인 CASE등이 소비자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분쟁, 특히 CPFTA를 근거로 하는 분쟁은 가액에 따라 소액손해법원에서 관할함

Ⅲ. 기대효과

-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를 조사·연구하여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과 교류에 기여함
- 대만과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정부에 법제정보를 제공함

▶ 주제어 : 법제교류, 대만, 싱가포르, 제조물책임법제, 소비자보호법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aiwan and Singapore are two of Korea's main trade partners which possess high consumer consciousness and have adopted and legislated product liability system.
- While the main items which Korea exports to Taiwan and Singapore consist of electronics, processed food, and cosmetics in which product defect is unavoidable, studies on these two countries' product liabilities laws are as progressed as needed.
-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structures and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s of Taiwan and Singapore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to businesses that are expanding to these two countries an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Asian legal information carried out by the Legal Collaboration Team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d the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II . Main Contents

- Taiwan's product liability law is based on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tort and contract laws provided on the Civil Code.

- Consumer Protection Law provides that business operators who are engaged in the business of designing, producing, manufacturing, importing or distribut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bear product liability for goods, including movables and immovables, and services.
- Consumer Protection Law protects consumer and 3rd parties against goods and services that fail to meet and comply with the contempora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of the reasonably expected safety prior to the sold goods launched into the market, or at the time of rendering services or does not have a warning and the methods for emergency handling of such danger labeled at a conspicuous location where goods or services may endanger the lives, bodies, health or properties of consumers.
- Consumer Protection Law applies strict liability, and the consum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defect, injury, and the causal link between the two.
- On the other hand, tort law provides that the manufacturer bears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that arise while a merchandise is produced, manufactured, processed, or designed. The plaintiff (consum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defect (prima facie evidence), an injury caused during a reasonable use or consumption of the merchandise, and the causal link between the two. The defendant (manufacturer) may prove that he met his duty of care.


- When product liability is based on warranty, the purchaser must prove the existence of sales contract, sale and delivery of the product, and the defect which substantially reduces the product's value; the manufacturer may defend himself with the purchaser's knowledge of defect, lack of examination at the time of purchase, or lack of notice from the purchaser to the manufacturer upon discovery of defect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product.
- When product liability is based on contractual duty, the purchaser must pro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chaser and the seller, incomplete performance by the debtor(seller), injury to the purchaser's body or property, and the causal link between the incomplete performance and the injury.
- The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under the Executive Yuan is in charge of enforcing and supervising product liability system. While authorized non-governmental consumer groups may bring a class action on behalf of consumers, Taiwan's Consumer Protection Law encourages mediation for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 In Singapore, product liability arises from breach of contractual duty, including breach of warranty and unfair contract, and from tort.
- Product liability based on contractual duty is provided in the Sale of Goods Act (SOGA) and the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

- SOGA provides remedies for the buyer who is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a seller who fails to supply goods of satisfactory quality under a contract of sale. The buyer must pro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seller and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however, the seller may elect defence that the unsatisfactory quality of goods was specifically drawn to the buyer'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was made or that the buyer examined the goods before the contract was made, which such examination should have revealed.
- CPFTA provides basis for product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ual duty when the supplier who is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made an unfair contract. The buyer must pro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nd may seek compensation up to 30,000 Singapore dollars.
- The Lemon Law provision added to the CPFTA provides for presumption of non-conformity of goods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relief for consumers.
- Under Singapore's tort law, the manufacturer bears product liability when the consumer did not have sufficient opportunity to inspect the product before sale and use of it, and when the manufacturer's duty of care could have prevented the defect and the injury which the consumer suffered therefrom. The consum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product's defect, manufacturer's negligence, and injury which is compensable. The consumer's contributory negligence or assumption of risk may be used as the manufacturer's defence.

- Singapore's product liability law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nd consumer groups such as CASE are actively involved in consumer activities.
- Product liability disputes in Singapore may, depending on the amount in dispute,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Small Claims Court.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of Asia by studying and analyzing Taiwan and Singapore's product liability laws.
-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information to the businesses expanding to Taiwan and Singapore, as well as to the government of Korea.

 **Key Words : Legislative Collaboration, Taiwan, Singapore, Product Liability Law, Consumer Protection Law**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 2 장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	21
제 1 절 개 관	21
제 2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	22
1. 소비자보호법상의 제조물책임	22
2.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	30
3. 민법상의 계약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	33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35
1.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감독	35
2.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36
3. 제조물책임 판례 동향	36
제 4 절 소 결	40
제 3 장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43
제 1 절 개 관	43

제 2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	44
1.	계약책임상 품질보증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44
2.	계약책임상 불공정거래에 의한 제조물책임	46
3.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50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53
1.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감독	53
2.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54
3.	제조물책임 판례	55
4.	외국 제조자의 제조물책임	56
제 4 절	소 결	56
제 4 장	결 론	59
참 고 문 헌		73
별 첨		75
별첨1: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중문)	77
별첨2:	싱가포르의 상품판매법 (영문)	91
별첨3:	싱가포르의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영문)	9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제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가 빈번해졌고, 이에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럽¹⁾과 북미²⁾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에서도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제조물책임법제가 도입되었다. 아시아는 국가 별로 역사에 따라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를 계승함과³⁾ 동시에 지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법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제조물책임법제의 발달과 확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제조물책임법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⁴⁾ 국가는 필리

-
- 1) 유럽에서는 1985년에 채택된 「제조물책임에관한 EC 지침(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이하 “EC지침”)」를 통하여 유럽 각국에서 통일된 양상으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였다.
 - 2) 미국은 1960년대 이후 판례법을 통하여 제조물책임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표적으로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1960) 판례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1963) 판례를 주요 근대적 판례로 꼽는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의 역사에 관하여 자세히는 Richard Epstein, “A Short History of Product Liability Law”, PointofLaw.com, Manhattan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pointoflaw.com/products/overview.php> (last visited on Sept. 1, 2013); Denis W. Stearns, “An Introduction to Product Liability Law”, Marler Clark Attorneys at Law LLP, PS, available at <http://www.marlerclark.com/pdfs/intro-product-liability-law.pdf> (last visited on Sept. 1, 2013).
 - 3) 영미법을 주로 계승한 국가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며,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는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포함된다.
 - 4) 기존의 영미법제를 따르던 법체계 내에 존재하던 계약 및 불법행위 법리를 넘어서 제조물책임을 법제화하기위하여 개혁(Reform)을 단행한 사례를 말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은 제외한다.

핀으로, 1992년에 제정한 필리핀 「소비자법」에 EC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물책임 관련 조항을 포함하였다.

1993년에는 중국이 「제품의 질과 양에 관한 법」과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바로 다음 해인 1994년에 대만이 EC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하였다.

1995년에는 일본이 EC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역시 EC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를 각각 제정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이르러서 EC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법의 영향을 받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부터 시행해왔다.

반면, 주로 EC지침을 참고로 하여 제조물책임법제를 도입하거나 소비자보호법 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싱가포르를 독특하게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판례 등을 통하여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법제를 갖추어 왔다.

본 연구의 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는 중화 상권에 속하는 국가들로 아시아에서도 비교적 일찍 제조물책임 개념을 도입·법제화하였으며, 소비자 의식이 높은 편이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2012년 기준으로 수출건수로는 각각 6위와 7위, 수출금액으로는 각각 7위와 5위를 기록한 바 있다.⁵⁾ 우리나라가 대만과 싱가포르에 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으로,⁶⁾ 제조물책임법 상 빈번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들이다. 전자제품은 특히 제조와 제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결함이 생기기 쉬우며, 가공식품과 화장품은 신체의 건강과 안전에 특히 민감한데, 대량생산 시 결함상품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5)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12).

6) Id.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 OEM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를 조사·연구하여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과 교류에 기여하고자 하고, 이 두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대만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같이 독립적인 제조물책임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보호법, 계약법, 판례법 등에서 제조물

7)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 간의 법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Asian Legal Information Network(ALIN)를 운영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법령정보를 수집·관리·확산하는 것이다. 2013년 법제교류지원사업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책임을 대주제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과제명	연구진	발간일	발간언어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Jiyeon Choi, Yanping Lin, Xuxu He, Zhihong Hu, Siwen Gong, Lingjian Hu	2013. 8. 31	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Seoyoung Lee, Nanzaddorj Lundendorj, Ayush Ariunbold, Temuulen Bataa, Sodnom Doljin, Insook Yoo	2013. 8. 31	영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최지연	2013. 10. 31	국문

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문 번역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제조물책임법은 대등한 두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근대 사법의 기본전제를 벗어나서, 협상력이나 경제력 등의 면에서 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와 소비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이러한 계약 속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를 돕고자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해당국가의 제조물책임법에서 일반 계약법에서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주체, 입증책임, 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법제상 책임의 주체, 입증 책임, 면책 사유, 배상 범위, 분쟁 해결의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법의 실제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의 시행·감독기관, 대표적인 제조물 책임 분쟁과 관련한 동향과 분쟁 해결 절차를 소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제공과 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대만과 싱가포르의 법제를 병렬적이고 평행적인 구조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수행에 있어 현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문헌연구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만의 법제는 중국어 원문과 영문, 싱가포르의 법제는 영어 원문을 참조로 하였다. 보고서를 한국어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문은 부분적인 번역만이 이루어졌으므로, 두 국가의 제

8)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대만대학교의 Sheng-Lin Jan(詹森林) 교수가 전문가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차성민 교수가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을 제공하였다.

조물책임법제의 주요 법문의 원문을 별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⁹⁾

9) 대만의 관련법 중에서는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싱가포르의 관련법 중에서는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SOGA)」,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 중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조문을 별첨하였다.

제 2 장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

제 1 절 개 관

대만은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한 국가이다. 제조물책임법제를 비롯한 소비자보호법제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의 피해 집적이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갖추어질 때에 확산된다.¹⁰⁾ 대만에서 소비자의 안전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된 쌀겨기름을 소비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한 사건과 가짜 주류의 소비한 소비자들이 실명한 사건 등이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1980년에는 자율적으로 소비자기금(中華民國消費者文教基金會, Consumers' Foundation, Chinese Taipei)이 결성되었다. 이후 소비자기금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로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거치고 있었으므로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대만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민법(民法, Civil Code)」 상의 계약법리 또는 불법행위법리를 이용하여야 했으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 법에 포함된 제조물결함 관련 조항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여졌다.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은 2003

10)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321면.

년과 2005년에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다 강력한 제조물책임조항과 집단소송 조항이 신설되었다.

소비자보호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으로는 1994년에 설립된 행정원(行政院) 산하의 소비자보호위원회(行政院消費者保護委員會,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Consumer Protection Act)」 제2장 제1절과 「민법」의 불법행위규정, 계약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제 2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

1. 소비자보호법상의 제조물책임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은 1994년 1월에 제정되어 동 월에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과 2005년에 개정된 바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있다.

[표-1] 대만 「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장	절	조	제 목
제1장		제1조 ~ 제6조	총칙
제2장			소비자권익
	제1절	제7조 ~ 제10-1조	건강과 안전의 보장
	제2절	제11조 ~ 제17조	정형화계약
	제3절	제18조 ~ 제21조	특수매매
	제4절	제22조 ~ 제26조	소비자정보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7조 ~ 제32조	소비자보호단체
제4장		제33조 ~ 제42조	행정감독

장	절	조	제 목
제5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제43조 ~ 제46조	소송과 조정
	제2절	제47조 ~ 제55조	소비자 소송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의 촉진, 국민소비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¹¹⁾ 이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법과 규정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¹²⁾

제조물책임은 「소비자보호법」 제2장 ‘소비자의 권익’ 중 제1절 ‘건강과 안전의 보호’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정의와 배상에 관한 내용은 제1장의 정의규정과 제7장의 벌칙규정에 위치하고 있다.

(1) 제조물의 범위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조물은 상품(商品, goods)과 서비스(服務, service)를 모두 포함한다. 동 법은 ‘소비자(消費者, consumer)’를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¹³⁾ ‘기업경영자(企業經營者)’란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 수입,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제7조 이하에서 기업경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도 상품과

11)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1조.

12)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항.

13)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14)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항.

서비스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법」 내에서 명시적으로 ‘제조물’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품’은 「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消費者保護法施行細則)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완제품, 반완제품, 원자재 및 부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원자재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서비스’의 의미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범위가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품’과 독립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만의 법원은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뿐 아니라 버스운송업, 물공급업, 오락업, 금융업을 비롯하여 의료와 같은 전문서비스에도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¹⁷⁾

(2) 제조물책임의 주체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기업경영자,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업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경영자란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 수입,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¹⁸⁾ 서비스의 의미가 상품과는 독립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아울러 동 법의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의 기업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¹⁹⁾ 비영리 기업의 경영자 또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5) 대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16) Gregory L. Fowler,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aw*, Aspatore Books (2004), p. 798.

17) Id.

18)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항, 제7조.

19) 대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동 법의 제7조에서는 기업경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업경영자는 연대책임(連帶賠償責任,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유통업자의 경우, 기업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나, 유통업자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에서 면제된다.²⁰⁾ 그러나 유통업자가 상품을 재구성, 재포장했거나 소단위로 나누었을 경우 또는 서비스의 성질을 변형하였을 경우 유통업자는 제7조의 기업경영자로 간주된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자는 상품의 설계자·생산자·제조사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로 간주되어 제7조의 생산자와 같은 책임의 주체가 된다.²¹⁾

이와 같은 정의는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해당된다. 외국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대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할 경우 대만의 「해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Law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to Civil Matters)」의 제26조에 의하여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3) 결함의 범위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제조물책임에는 두 가지 결함을 정하고 있다. 첫 번째 결함은 제7조의 제1단락에 근거하고 있다. 상품을 설계, 생산 또는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영자는 당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나 판매 및 제공 당시의 흔히

20)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8조.

21)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9조.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의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첫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와 설명서, 둘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또는 수용 방법, 셋째, 상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기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²²⁾ 이러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였을 때 법 제7조 제1단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의 제1단락에서 요구하는 합리성(合理期待, reasonably expected)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객관적 기준(일반적인 사회에서 합리적인 주의력을 갖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각 사건에서의 실제 당사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²³⁾

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매 또는 제공 이후의 보완 조치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나 판매 및 제공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기술 또는 전문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이 고려된다.”²⁴⁾

두 번째 결함은 동 법의 제7조의 제2단락에 근거하고 있다. 이 단락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와 위험발생시 응급대처 방법 대하여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대만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23) Jocelyn Kellam ed.,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The Federation Press (5th ed., 2009), p. 439.

24) Id.

요약하자면, 「소비자보호법」상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함은 (1)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고와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이기 쉽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4) 제조물책임규정의 보호 대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消費者, consumer)’는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으며,²⁵⁾ 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이다.²⁶⁾ 즉,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규정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소비자이다.

동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소비가 아닌 재판매, 소매, 가공 등의 상업적 목적을 가진 구매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따라서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법」은 제3자에 대한 정의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7조의 기업경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서 기업경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업경영자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어 제3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제3자란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기업경영자가 예견할 수 있는 자로,²⁷⁾ 여기에는 소비자의 가족구성원, 손님, 고용인 등이 주로 포함된다.

25)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26)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1조.

27) Id.

(5) 입증책임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제7조에서는 기업경영자에게 제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업경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제3자는 제조물의 결함, 피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제조물책임을 묻는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제1단락에 따른 결함일 경우 소비자는 첫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나 판매 및 제공 당시의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함이 있고), 둘째,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셋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나 판매 및 제공 당시의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입증은 일응의 추정(*prima facie*)으로 충분하며, 이후에는 동법 제7-1조에 따라 기업경영자에게 이를 반증할 책임이 생긴다.

만약 제조물책임을 묻는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제2단락에 따른 결함일 경우 소비자는 첫째,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와 위험발생 시 응급대처 방법 대하여 쉽게 인식 가능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따라서 결함이 있고), 둘째,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셋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6) 배상 범위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懲罰性賠償金, punitive damage) 외의 배상의 범위 또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단,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⁸⁾ 따라서 배상에 관하여서는 「민법」을 적용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 소비자는 만약 사업경영자가 고의로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적 배상(compensatory damage) 금액의 세 배까지, 과실로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적 배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²⁹⁾

(7) 면책 사유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기업경영자가 법 제2장 제1절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제조물 책임에 대한 사전 면책은 불가능하지만,³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면책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없을 경우, 둘째 제품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을 경우, 그리고 셋째, 원고가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아닐 경우³¹⁾이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근거가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제2단락에 따른 결함일 경우,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에

28)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1조.

29)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

30)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10-1조.

31)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제7조.

대한 경고와 위험발생 시 응급대처 방법 대하여 쉽게 인식 가능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해석과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면책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42조에 의하면 동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통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입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일어났을 시에는 기업경영자와의 연대책임에서 면해진다.³²⁾

기업경영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부재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의 부재를 증명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면해진다.³³⁾

2.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

대만의 제조물책임은 주로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 상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책임을 근거로 하여 결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였다. 「민법」에서 제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제191-1조이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배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동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

32)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8조.

33)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51조.

고 있으므로,³⁴⁾ 배상에 관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제에서 「민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소비자보호법」과는 달리, 「민법」 제191-1조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적용범위는 상품(商品, merchandise)에 국한된다. 「민법」 상의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는데, 제조자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말하며, 상품에 상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여 그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³⁵⁾ 또한, 상품의 수입자도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³⁶⁾

(2) 결함의 범위

「민법」 상의 결함은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설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³⁷⁾ 아울러,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설계가 상품의 설명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결함으로 간주한다.³⁸⁾

(3) 제조물책임규정의 보호 대상

「민법」에서는 소비 목적과 관계없이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⁹⁾ 이는 제조

34) 대만 「소비자보호법」법 제1조.

35) 대만 「민법」 제191-1조 제2단락.

36) 대만 「민법」 제191-1조 제4단락.

37) 대만 「민법」 제191-1조 제1단락.

38) 대만 「민법」 제191-1조 제3단락.

39) 대만 「민법」 제191-1조 제1단락.

물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제3자나 소매업자 등도 이 조항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입증책임

「민법」상의 제조자는 자신의 상품이 일반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원고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 제조물을 일반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를 했을 때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상으로는 피해를 입은 자, 즉 원고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했다.⁴⁰⁾ 그러나 2000년 5월에 「민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제조물의 제조자가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게 되었다.⁴¹⁾

(5) 배상 범위

「민법」상의 배상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제213-2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restitution), 두 번째는 제192조, 제193조, 제19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그리고 제194-1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전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다. 여기서 비금전적 피해란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다.

(6) 면책 사유

「민법」은 「소비자보호법」과는 달리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자가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면 어떠한 배상책임도 가지지 않는다.⁴²⁾ 또한 제조물에 생

40) 대만 「민법」 제184조.

41) 대만 「민법」 제191-1조.

42) 대만 「민법」 제191-1조 제1단락.

산, 제조, 가공, 설계상의 결함이 없을 경우나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민법상의 계약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

(1) 품질보증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

1)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대만의 「민법」 제359조, 제360조 및 제364조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통하여 판매자의 제조물책임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구매자는 (1) 제품의 매매 계약서, (2) 판매자에 의한 제품의 판매와 인도(sale and delivery), (3) 제품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면책 사유

판매자는 (1) 구매자가 제품의 구매 시 결함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경우, (2) 구매자가 제품의 인수 시 합리적인 제품 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3) 구매자가 합리적인 제품의 점검 시 발견 가능했을 결함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질보증책임에 의거한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 범위

품질보증책임 위반에 의한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으로 구매자는 (1) 계약의 철회,⁴³⁾ (2) 상품의 가격 인하,⁴⁴⁾ 또는 (3) 「민법」 제359조와 제360조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3) 대만 「민법」 제359조.

44) Id.

(2) 계약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

1) 적용 범위와 입증책임

한편, 「민법」 제227조는 채무자의 불완전한 의무 이행에 근거하여 판매자의 제조물책임의 근거를 제공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상의 관계를 맺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

즉, 판매자가 인도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입힐 경우, 이는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227조에 의한 계약책임을 통하여 판매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하여 구매자는 (1)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관계, (2) 채무자의 계약상의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3) 구매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4) 계약 책임의 불완전한 이행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2) 보호 대상

이 조항은 계약상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맺는 구매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소비자 간, 제조자와 제3자 간, 또는 판매자와 제3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3) 배상 범위

계약 책임 위반에 의한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으로 구매자는 「민법」 제227조에 따른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가능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상기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1.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감독

소비자보호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으로는 1994년에 설립된 대만 행정원(行政院) 산하의 소비자보호위원회(行政院消費者保護委員會,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가 있다. 이 기관은 2012년 구조조정을 거쳐 일부는 행정원 내 소비자보호처(消費者保護處, 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로, 일부는 소비자보호회(行政院消費者保護會,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로 개편되었다.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설립에관한규정(行政院消費者保護委員會設置要點)」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1) 소비자보호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의 검토·심의, (2) 「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심의, (3) 정형화계약서의 서식과 정형화계약이 불가한 품목의 제개정의 검토·심의, (4)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시행 결과의 평가와 검토·심의, (5) 소비자보호 주관기관 및 기제와의 협조, (6) 주요 소비자문제에 대한 협력 및 대응, 행정관리체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7) 우량 소비자호보단체의 평가, (8) 기타 정부기관과의 협조 및 위원회 검토 사항 등을 포함한다.⁴⁵⁾

45)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 <http://www.cpc.ey.gov.tw/cp.aspx?n=B83332661DA4E410>.

「소비자보호법」의 제3장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의 결성, 역할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입법 및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량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⁴⁶⁾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업력 3년 이상의 우량소비자보호단체가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⁴⁷⁾

현재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단체로는 소비자기금회(中華民國消費者文教基金會, CFCT),⁴⁸⁾ 대만소비자보호협회(台灣消費者保護協會)⁴⁹⁾ 등이 있다.

2.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제조물책임과 소비자 관련 분쟁은 소액의 피해가 다수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43조와 제47조-55조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절(제44조-제46조)에서는 조정에 대하여, 제2절에서는 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다.

3. 제조물책임 판례 동향

제조물책임을 비롯한 소비자 분쟁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보호단체나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최근의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로 제조물책임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대만 법원은 제조물책

46)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7조~32조.

47)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50조.

48) 소비자기금회, <http://www.consumers.org.tw>.

49) 대만소비자보호협회, <http://www.cpat.org.tw/>.

임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좁게 해석하고자 하는 동향이 보이며, 이는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는 ‘기업경영자’의 범위가 넓고,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제조물책임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⁵⁰⁾과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기업경영자의 의도적인 행동이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⁵¹⁾ 대만고등법원 카우슁분원 2008년 제81호 민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하던 중 피고 고용 버스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에 심한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으며 재산적 손해배상(치료비등)을 청구함은 물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제51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함께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소비자보호법」 제51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요건상 ‘과실’의 의미로, 동 조는

본 법에 의거하여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기업경영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소비자는 당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1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⁵²⁾

50) 사업경영자가 고의로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적 배상¹⁾ 금액의 세 배까지, 과실로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적 배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법 제51조).

51) 대만 대법원 No. Tai San 330, 2010. 두 명의 대만인 관광객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인 운전수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다.

52) 대만 대법원 No. Tai San 330, 2010.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제51조는 미국법을 참고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였는데, 그 인정요건과 관련하여, 단순 과실인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허하는 것은 미국법 하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입법 레이며, 따라서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와 대만의 손해 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본질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51조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하여 이를 ‘중대한 과실’인 경우로 제한해석 하여야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측 운전기사에게 버스 운행상 단순 경과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주장을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아무런 법리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⁵³⁾

아울러 대만의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비금전적 피해만을 입었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⁵⁴⁾ 즉,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징벌적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대만최고법원 2002년 제1495호 판결의 사건으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8년 피고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타이페이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하였다. 원고는 비즈니스 등급의 금연연구역을 예약하였는데, 배정된 자리가 바로 흡연구역 앞에 위치한 금연연구역이었다. 이에 원고는 승무원에게 자리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승무원에게 거절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임의로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마저 제지당하였다. 할 수 없이 원고는 16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뒷좌석 손님의 흡연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원고는 간

53) 詹森林, “消保法懲罰性賠償金責任之過失應否限於重大過失?台灣高等法院高雄分院九十七年上字第八一號民事判決之評析”, 月旦裁判時報 201008 (4期), pp.50-59.

54) 대만 대법원 No. Tai San 1495, 2008.

접흡연으로 인하여 미국 도착 후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치료비용, 여행시간낭비비용, 숙박비용, 렌트카 비용 등 실제손해액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 제51조에 의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소비자보호법」 제51조의 징벌적 손해배상규범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초가 되는 손해액범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인(제1심 원고인 피해주장자)은 항소심에서 재차 「소비자보호법」 제51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규범의 적용요건 및 범위를 살피건대, 기업경영자가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당해 산정기초손해액은 재산적 손해만을 의미할 뿐 비재산상 손해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본건 심리과정에서 항소인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간접흡연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손해가 부정됨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더더욱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⁵⁵⁾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은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기업경영자’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어 기존의 「민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에 비하여 소비자 구제가 용이한 편이나, 「소비자보호법」 제51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5) 대만 대법원 No. Tai San 1495, 2008.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제조물책임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협의나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단, 법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의 「해외민사법률적용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업, 즉 외국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대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할 경우 대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 및 「민법」이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대만의 제조물책임법제는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보호법 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물책임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타 국가들의 법과는 달리 총 여섯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또한 ‘결함’, ‘제3자’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해져있다.

둘째, 제조물책임 소송에서는 일차적으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물론 제조물의 결함에 있어서는 일응의 추정(*prima facie*)으로 충분하고, 이후 사업자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입증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셋째, 사업운영자의 범위가 넓고 무과실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대만의 제조물책임규정이 일견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소비자 피해 구제의 용이성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운영자의 포괄적인 정의와 무과실책임원칙이 그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

넷째, 제조물책임을 비롯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소송, 소비자보호단체에 의한 집단 소송,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쟁 해결책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액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3 장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제 1 절 개 관

싱가포르의 법체계는 전반적으로 영국의 법체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책임 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으로 과거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영연방 국가들의 판례가 법으로서의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영국이 1987년에 제정한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싱가포르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단일법이 없고, 제조물책임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품목에 관하여 각각의 법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⁵⁶⁾

따라서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는 여러 법제와 법리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불법행위와 계약책임에 따른 판례법을 들 수 있으며, 계약책임과 관련하여는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SOGA)」, 「상품제공법(Supply of Goods Act, SGA)」, 「불공정거래법(Unfair Contract Terms Act)」,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 「소비자보호(교역품명시및안전요건)법(Consumer Protection (Trade Description and Safety Requirements) Act, CPTDA)」등이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

56) 단, 식약품과 같이 특정한 품목의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개별법들은 다수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무기 및 폭발물법(Arms and Explosives Act)」, 「부식 및 폭발성 물질과 공격성 무기법(Corrosive and Explosive Substances and Offensive Weapons Act)」, 「폭발성물질법(Explosive Substances Act)」과 같은 무기와 폭발성 물질과 관련된 법과 「독성물질법(Intoxicating Substances Act)」, 「약품법(Medicines Act)」, 「독극물법(Poisons Act)」, 「약품판매법(Sale of Drugs Act)」,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등과 같은 식약품 관련 법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들은 행정규제적 성격이 강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다는 벌금과 같은 행정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다. Fowler, pp. 697-608; Kellam, p.398.

을 정하고 있다. 특히, CPFTA는 2012년 개정을 통하여 계약 또는 기준에 어긋난 제품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소비자 구제 방법들을 신설하였다. 이 신설 조항은 레몬법(Lemon Law)로도 불리며, 개인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SOGA나 SGA가 제공하지 못 했던 구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불법행위(과실)책임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을 지고 판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책임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을 진다.

제 2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계약책임상 품질보증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계약책임상 품질보증에 의거한 제조물책임은 결함이 있는 상품을 제공한 자가 지게 되어있으며, 계약의 위반에 의거한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즉, 제공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 계약과 달리 결함이 있는 상품이었을 경우 제공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1)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품질보증에 의거한 제조물책임의 범위는 계약의 범위에 의존하는데 「상품제공법(Supply of Goods Act, SGA)」이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는 (1)상품판매계약, (2)할부판매계약, (3) 증서계약, (4) 담보계약이 포함된다.

SGA는 1992년에 제정된 영국의 「상품과서비스제공법(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를 1993년에 그대로 도입한 법이지만, 영국법의 제 12조 이하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SGA에서 말하는 상품의 판매 계약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제

조물책임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책임만을 포함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외된다.

2) 결함의 범위

계약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의 결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르지만,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SOGA)」와 「상품제공법(Supply of Goods Act, SGA)」은 모든 상품의 판매 계약(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의 표준 조건을 정하고 있다.

SOGA는 판매자가 영업행위로 상품을 판매할 때에 계약상 판매된 상품은 ‘만족스러운 품질(satisfactory quality)’의 상품이라는 묵시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다.⁵⁷⁾ ‘만족스러운 품질’이란, 합리적인 사람(보통인)이 상품에 대한 설명, 가격 등을 포함한 관련 요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상품이 만족스러운 품질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상품은 결함이 있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은 (1)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흔히 제공되는 목적을 위한 적합성(fitness), (2) 모양과 마감, (3) 사소한 결함으로부터 자유함, (4) 안전성, (5) 내구성을 포함한 상품의 성질에 적용될 수 있다.

3)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는 (1) 상품의 제공자와 계약을 맺었고, (2) 제공자가 결함이 있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면책 사유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1) 계약 전에 품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매자에게 주의를 주었을 경우, (2) 계약

57) 싱가포르 SOGA 제14조 제2A항.

전에 구매자가 제품을 점검하였고, 그러한 점검이 제품의 불만족스러운 품질을 드러냈을 경우, (3) 견본품에 의한 판매 계약이었을 경우, 견본품의 합리적인 점검이 제품의 품질을 뚜렷이 드러냈을 경우.

2. 계약책임상 불공정거래에 의한 제조물책임

(1)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소비자는 정보의 파악 면에서 제공자에 비하여 취약한 입장에 있다.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며, 불공정한 거래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PFTA)」에서 정하는 ‘제공자(supplier)’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영업행위로서 (1)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상품을 제조, 조립, 생산하는 사람,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판매를 촉진하는 사람, 또는 (4)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댓가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수를 받는 사람. 이 범위에는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포함된다.

이 정의는 비교적 포괄적인 것으로, ‘제공자’에는 제조자, 수입자, 배포자, 소매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⁵⁸⁾ 또한 CPFTA 상의 제공자에는 판촉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특징적인데, 제조물책임의 근거가 제조물에 관한 정보에 있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의 입장을 악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판촉인이 제조물책임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볼 수 있다.

58) ICLG, p.255.

CPFTA에서 정하는 ‘제공자’의 범위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제조물의 범위에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9년 개정을 통하여 CPFTA가 적용되는 범위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2) 결함의 범위

CPFTA은 소비자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자의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즉, (1) 제공자의 한 말이나 행동(또는 말이나 행동의 생략)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속거나 호도될 결과를 낳을 경우, (2) 허위 주장을 할 경우, (3) 소비자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나 소비자가 거래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그 특징, 성격, 언어,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공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악용하였을 경우, (4) 또는 스케줄4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이다.

스케줄4에서 정하는 경우는 (1) 상품이나 서비스가 갖추지 않은 스폰서십, 허가, 성능상의 특징, 액세서리, 재료, 부품, 질, 용법, 또는 혜택을 갖추었다고 할 경우, (2)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는 기준, 품질, 등급, 스타일, 모델, 제조공정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경우, (3) 상품의 중고 여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4) 상품의 사용력(history of use)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5) 상품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할 경우, (6)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호도하기 위하여 작은 글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CDFTA와 유사하게 「소비자보호(교역품명시및안전요건)법(Consumer Protection (Trade Descrip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CPTDA)」은 부

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부실표시법(Misrepresentation Act)」은 호도하거나 현혹적인 행동에 대하여 부실표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통하여 판매된 제품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판례에 따르면 제품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었을지라도 소비자가 제공 받은 설명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었으면 그 제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⁵⁹⁾

(3) 보호 대상

CPFTA에서 불공정거래는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 거래’란 (1) 구매, 대여, 선물, 대회 또는 기타 주선으로 인하여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제공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구매, 대여, 선물, 대회 또는 기타 주선으로 인하여 제공자가 소비자나 계약에서 정하는 제3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CPFTA가 보호하는 대상은 실제 소비자를 말하며,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허위 사실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는 소비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고, 소매업자는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2012년에 신설된 CPFTA의 제12A조에서 제12F조의 조항(레몬법)은 영업상 구매를 하는 소매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입증책임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역시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9) Kellam, p.399 (*Acros Ltd. v. Ronaasen & Son*, AC 470 (1933) 참조).

단, 개정된 CPFTA에 신설된 레몬법 조항은 제품의 불합치 추정 조항을 두었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인도 받은 지 6개월 이 내에 계약과의 불합치가 발견되면 이는 계약 당시의 불합치(non-conformity)로 추정되어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면책 사유

CPFTA를 통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제공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소비자가 불합리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면책 사유가 성립된다.

(6) 사전 면책

「불공정거래법(Unfair Contract Terms Act, UCTA)」은 사업자(business)와 개인 소비자(private consumer) 간의 매매일 경우 판매자가 계약 내 묵시조항상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⁶⁰⁾

CPFTA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조항(레몬법)은 판매자가 개인 소비자와 계약할 때에 레몬법의 조항들을 사전에 제외시키지 못 하도록,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레몬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7) 배상 범위

CPFTA의 레몬법은 소비자가 판매자와 맺은 계약상의 설명과 실제 제품이 불합치(non-conforminty)할 경우 이를 결함으로 간주한다. 레몬법은 기존의 SOGA에 비하여 불합치의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SOGA에서는 제품의 합치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일 경우에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반면, 레몬법은 그러한 조항이 계약의

60) 싱가포르 UCTA Section 6(2)(a).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품이 계약에 명시된 조항과 불합치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CPFTA는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최고 30,000 싱가포르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3.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계약법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의 과실 책임(negligence)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을 적용한다.⁶¹⁾ 앞서 언급하였듯이 싱가포르의 불법행위법(tort)은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전통적으로 영국의 판례를 싱가포르의 법으로 인정해왔다.⁶²⁾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과실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은 영국의 “달팽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Donoghue v. Stevenson*⁶³⁾ 판례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 판례는 제품의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 없이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제품이 중간 검사(intermediate examination)를 거칠 합리적인 가능성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것을 의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판매할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61) 일반적으로 방해행위는 제조물책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경우 (interference with another's enjoyment of his or her property), 방해행위 법리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Kellam, p.404.

62) 싱가포르는 1993년에 제정되고 1994년에 개정된 「영국법적용법(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을 통하여 일부를 제외한 영국법이 그대로 싱가포르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하지 않은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최근에는 영국의 법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63) *Donoghue v. Stevenson*, (1932) AC 562. 판례의 자세한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하여는 Franco Ferrari, *Donoghue v. Stevenson's 60th Anniversary*, 1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81 (1994) 참조.

달리 말하자면 (1) 소비자가 제조품을 구매·사용하기 전 당해 제조품을 충분히 살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조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가지며, (2) 제조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⁶⁴⁾ 즉, 제조자는 계약상의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진다.

(1) 제조물책임을 주체와 보호대상

앞서 언급한 *Donoghue v. Stevenson* 판례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에 큰 변혁을 가져온 판례로, 그 전까지는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와 계약관계가 없었을 경우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주의의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물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판례 이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제조자 또는 판매자 간에 계약상의 관계가 없을 때에도 제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실책임은 소비자가 계약상의 관계를 맺지 않은 자, 즉 판매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때에 활용된다. 그리고 *Donoghue v. Stevenson* 판례에 근거하여,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나 판매자와 계약상의 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가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판매자가 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주체가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3자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람이어야 한다.⁶⁵⁾

64) Jocelyn, p. 402 (*Donoghue v. Stevenson*, (1932) AC 562 인용).

65) Fowler, p.700.

(2)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가진다. 과실책임에 근거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경우 소비자는 (1) 결함이 제조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 (2)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었을 것, 제조품이 제조 이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도달하였을 것, 제조 당시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안전 대책을 요하는 기술일 것, (3) 법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제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해 당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소비자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입증하여야 한다.

(3) 배상 범위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배상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1)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 금전적인 형태로 배상이 되며, (2) 그 금액은 제품의 결함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힐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된다.⁶⁶⁾

(4) 면책 사유

과실이 제조물책임의 근거일 경우 제조자는 두 가지 면책 사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

66) Jocelyn, p.411.

있었을 경우로, 소비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피해의 원인에 기여하였을 때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경감된다.⁶⁷⁾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분쟁해결

1. 제조물책임법제의 집행과 감독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소관 하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PFTA는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종래에는 적용 범위 밖에 있었던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CPFTA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보험, 증권, 대부 등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가 CPFTA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의 규제와 감독 업무가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싱가포르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의 소관에서 통상산업부의 소관으로 이전되었다.⁶⁸⁾

정부기관 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비정부기구를 통한 소비자 활동이 활발하다. 싱가포르소비자협회(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CASE)는 1971년에 설립된 독립 비영리 소비자단체이다. 이 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교육, 소매업자와의 협력 및 입법 로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2012년 CDFTA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레몬법 조항의 입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냈다.⁶⁹⁾

67) Global Legal Group ed.,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3 (2013), p.256.

68)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mti.gov.sg/legislation/Pages/Consumer%20Protection.aspx>

69)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http://www.case.org.sg/history.html>.

CASE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 분쟁에 개입하여 판매자 및 제조자와의 조정, 중재, 소송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ASE는 싱가포르 소비자 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소비를 하는 관광객의 불만도 접수하고 있다.⁷⁰⁾

2. 제조물책임 분쟁 해결

제조물책임을 비롯한 소비자 분쟁은 소액다수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의 경우 소송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소액손해재판소에서 소가 제기된다. 가액을 기준으로 소액손해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소송가액이 2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⁷¹⁾

소액손해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의 판매 계약, (2) 서비스의 제공 계약,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단,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⁷²⁾

소송가액이 6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치안재판소, 250,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상사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이 잘 발달한 국가로,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조정원(Singapore Mediation Centre) 등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협상, 조정, 중재가 가능하다.

70) 그러나 특정 분야의 소비자 고충은 접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 간(B2B) 분쟁, 임대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 투자 관련 분쟁, 교통사고 분쟁,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한 분쟁은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http://www.case.org.sg/making_a_complaint.html.

71) 싱가포르 「소액손해재판소법(Small Claims Tribunals Act」 제5조 제4항.

72) 싱가포르 「소액손해재판소법(Small Claims Tribunals Act」 제5조 제1항~제2항.

3. 제조물책임 판례

싱가포르의 사법 제도는 비교적 효율적이고 신속한 편이지만, 소송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분쟁 사건이 그다지 축적되어 있는 편이 아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은 주로 소액손해재판소에서 다투어지는데, 소액손해재판소에서의 사안은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손해재판소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통계도 집계가 어려운 편이다.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 판례의 가장 주요한 사건은 *TV Media Pte Ltd v. De Cruz Andrea Heidi and Another*⁷³⁾이다. 이 사건은 원고가 체중조절약을 복용한 뒤 급성간기능 장애라는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원고는 신체적 고통과 의료비용을 배상으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체중조절약의 수입회사, 수입회사의 임원, 그리고 독점유통업자가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임원과 독점유통업자가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하위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이 안전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수입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비록 회사가 임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실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결을 내렸다.⁷⁴⁾

싱가포르의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Afro-Asia Shipping Company (Pte.) Ltd. v. Da Zhong Investment Pte. Ltd.*⁷⁵⁾ 사건에서 영국

73) [2004] 3 SLR 543 and [2003] 4 SLR 682 [High Court decision].

74) Catherine Tay Swee Kian, "New Developments in Duty of Care: The Singapore Approach to Negligence in Product Liability after the Slim 10 case", *Business Law Review* (May 2005), pp.1-9.

75) [2004] 2 SLR(R) 117.

의 *Rookes v. Barnard*⁷⁶⁾ 판결이 싱가포르에서도 유효한 법임을 인정하였는데, *Rookes v. Barnard*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의 청구가 가능한 범주를 정한 판결이다. 싱가포르의 법원은 매우 드물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판결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두 판결은 싱가포르가 비록 단독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조물의 안전성은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인격부인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4. 외국 제조자의 제조물책임

싱가포르의 「사법부대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에 의하면 피고가 소장을 적절히 송달 받을 경우에만 법원의 관할 하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원고든 사건이 소송의 사유와 관련 사항들이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 하에 있음을 증명하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부는 싱가포르 밖의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는 영장(writ)을 발부할 수도 있다.⁷⁷⁾ 따라서 위의 여건이 충족될 경우, 외국 제조자는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제조물의 안전사건에 대하여 싱가포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 4 절 소 결

싱가포르는 90년대를 전후로 독립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거나 소비자보호법 내에 제조물책임규정을 신설한 타 아시아 국가들이나

76) [1964] AC 1129 (Eng.).

77) ICLG, p.259 (Order 11 rule 1 of Rule of Court 인용).

영국과는 달리 독립된 제조물책임법이나 규정이 없다. 대신 영국과 싱가포르의 판례에 따른 판례법이 불법행위 법리와 아울러 판례와 제정법에 따른 계약책임법리, 불공정거래법리가 제조물책임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제정법인 SGA, SOGA, CPFTA, 그리고 최근 CPFTA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레몬법 조항 등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단일적인 제조물책임법의 부재는 싱가포르의 산업 발달 양상에서 그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이다. 한정된 자원과 국토로 인하여 제조업보다는 관광·서비스업이 주로 발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융업이 대표적인 국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되는 공산품이나 가공품은 대부분이 주변 국가에서 수입해오는데, 수입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국가 산업적 배경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는 독자적인 제조물책임법제의 입법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식품, 약품, 독극물, 무기 등과 같이 품목에 따라서는 그 품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단, 금융업이 크게 발달한 국가인 만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CPFTA의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도 계약법리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금융관련 기구들에서 통상산업부로 이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인 CASE에서는 독특하게도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싱가포르 시민과 관광객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관광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관광서비스에 대한 관광객들의 고충이 제조물에 대한 고충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있다. 제조물, 식품과 약품에 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와 계약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 역시 적용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제조물책임 소송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본 장에서 소개한 법제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상사중재와 조정이 발달한 국가인 만큼, 소비자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이상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제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요약하자면, 대만은 1994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 과 계약책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적용도 가능하다. 「소비자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민법」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영국 법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제조물책임의 개념 역시 영국의 판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1987년에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싱가포르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단일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 SOGA, CPFTA와 같은 계약법제에 그 근거가 흠어져있으며, 피해자의 지위,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범위 등에 따라 유리한 조항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판례에 근거한 불법행위로의 제조물책임도 적용 가능하다.

두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의 주요 내용은 표-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2]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주요 제조물책임법제 비교대조표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소비자보호법	대만	계약책임	SGA - 상품 CPFTA - 상품과 서비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주택 포함) 제조품	
적용범위	소비자보호법	(1)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완제품, 반완제품, 원자재 및 부품을 포함하는 상품, (2) 서비스	계약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GA - 상품 CPFTA - 상품과 서비스 (금융상품 및 서비스, 주택 포함) 	제조물(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함)
	불법행위	상품	불법행위	제조품	
제조물책임의 주체	소비자보호법	비영리기업경영자를 포함한 기업경영자(상품설계자,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서비스 제공자)	계약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GA - 소비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제공자 CPFTA - 소비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제공자로 (1)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상품을 제조, 조립, 생산하는 사람, (3) 	(1)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2)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단,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 또는 판매를 촉진하는 사람, (4)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댓가로 급전적 또는 비급전적 보수를 받는 사람, (5) 고용인과 대리인 포함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 정)
	제조자	제조자	
소비 자 보호	불법 행위	불법 행위	
결함의 범위	(1)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또는 판매 및 제공 당시 흔히 이용되던 기술 또는 전문적 기준 하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 SOGA - (1)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 흔히 제공되는 목적을 위한 적합성(fitness), (2) 모양과 마감, (3) 사소한 결함으로부터 자유함, (4) 안전성, (5) 내구성등을	(1) 제조상의 결함(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제 4 장 결 론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p>소비자에게 위협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고와 위험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보이기 쉽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p>	<p>포함한 상품의 성질에 근거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FTA - (1) 제공자의 한 말이나 행동(또는 말이나 행동의 생략)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숙거나 호도될 결과를 낳을 경우, (2) 허위 주장을 할 경우, (3) 소비자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나 소비자가 거래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 그 투쟁, 성격, 언어,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공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악용하였을 경우, (4) 	<p>못하게 된 경우), (2) 설계상의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표시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p>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제조물 책임 규정의 보호 대상	<p>불법 행위</p> <p>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설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음</p>	<p>또는 스케줄4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p> <p>(1) 소비자가 제조품을 구매·사용하기 전 제조품을 충분히 살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조자는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가지며, (2) 제조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p>	<p>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p>
소비자 보호	<p>소비자의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p> <p>제3자(소비자의 가족, 손님, 고용인 등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p>	<p>계약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GA - 제공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구매자/소비자 • CPFTA -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제 4 장 결 론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불법 행위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일반적인 사용자 또는 소비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자)	불법 행위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제조자나 판매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람)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 • 소비자가 결함, 피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 입증 	계약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GA - 소비자가 상품 제조자와의 계약관계, 결함이 있는 상품으로 인한 계약 위반을 입증 • CPFTA - 소비자가 입증 (단, 레몬법 조항에서 인도 후 6개월 이내에는 불합치 추정) 	소비자(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한 자)가 제조물의 결함,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 입증
불법 행위	원고(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일응의 추정), 제조물의 일반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하여 발생한 피해, 결함과 피	불법 행위	원고(소비자)가 (1) 결함이 제조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 (2)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었을 것, 제조품이 제조 이후 변형되지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배상 범위	<p>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 * 제조자의 주의의무 충족 여부는 제조자가 입증</p>	<p>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도달하였을 것, 제조 당시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안전 대책을 요하는 기술일 것, (3) 법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제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것 입증 *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시 피해 당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소비자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원고(소비자)가 입증</p>	<p>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제외한 확대손해배상(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확대된 인적·물적 손해) *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실에</p>
	<p>(1) 민법에 따른 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p>	<p>계 약 책 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GA 및 레몬법 - 환불 • CPFTA - 싱가포르\$ 30,000 	

제 4 장 결 론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p>불법 행위</p>	<p>(1) 원상회복, (2) 금전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3) 비금전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p>	<p>결함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힐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금전적 배상</p> <p>* 금액 제한 없음</p>	<p>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 *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 * 배상액 금액 제한 없음</p>
<p>면책 사유</p>	<p>소비자보호법</p> <p>(1) 제7조 제2단락에 따른 결합에 대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2) 유통업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3) 기업경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재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면제</p> <p>* 사전 면책 불가</p>	<p>불법 행위</p> <p>계약 책임</p> <p>• SOGA - (1)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을 경우, (2) 계약 전 구매자가 제품의 불만족스러운 품질을 드러냈을만한 점을 하였을 경우, (3) 견본품에 의한 판매에서 견본품의 합리적 점검이 제품의 품질을 뚜렷이 드러냈을 경우</p> <p>• CPFTA - 제공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소비</p>	<p>(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p>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p>불법 행위</p> <p>(1) 제조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2) 제품에 결함이 없었을 경우, (3) 결함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었을 경우</p>	<p>자가 불합리적으로 의존하였을 경우</p> <p>(1) 소비자의 위험감수, (2) 소비자의 기여과실</p>	<p>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p> <p>* 단,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사유 주장 불가</p> <p>* 사전면책 불가</p>
<p>감독기관</p>	<p>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p>	<p>통상산업부</p>	<p>한국소비자원</p>

제 4 장 결 론

주요 내용	대 만	싱가포르	한 국 ⁷⁸⁾
제조물 책임 분쟁 해결 방법	조정을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소송(가액에 따라 소액손해재판소 관할)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 분쟁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소송, 소비자단체소송

78)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본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 결과의 활용도와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비교표에 포함하였으며, 표의 내용은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였으며, 이 외에도 박길준,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8. 12)와 정용수 외,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2010) 등을 참고하였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발전과 현황 및 개정방안에 대하여 자세히는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제5판, 2005),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제의 적용에 있어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은 부동산에, 싱가포르의 CPFTA는 주택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비된다. 한국에서는 제조물의 개념에 부동산, 특히 대량공급 되는 주택을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견해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⁷⁹⁾

또한 대만은 제조물의 정의에 원자재를 명시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이 농수산물, 임산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명시적으로 CPFTA상의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약책임 법리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제조물에 농수산물이나 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계자와 유통업자, 비영리기업경영자까지 포함된다.

결함의 범위에 있어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은 두 가지 결함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제조물책임법」 설계상의 결함과 유사하며 두 번째는 표시상의 결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만의 「민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은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의 조합이라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제조물의 결함은 설계와 제조상의 품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또는 계약상 보증된 품질에 어긋날 경우에 결함이 발생한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제는 모두 소비자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제3자까지 구제가 가능하다.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상 원고가 지게 된다. 단, 대만의 불법행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일응의 추정이 적용되며, 싱가포르의 레몬법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한하

79) 박동진, p.5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 결과보고서」 (1996), p.83 인용).

여 제조물이 계약상 보증된 품질에 불합치했다는 것을 추정한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완화는 최근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제조물책임 분쟁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동향의 예로 볼 수 있다.

배상범위는 배상액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가포르의 CPFTA는 상한액을 30,000 싱가포르 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증액한 금액이다.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으나, 대만과 싱가포르는 제한적이거나 제조물책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면책사유는 각국의 법제가 정하고 있는 결함의 범위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으로 사전면책은 불허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소비자보호법」과 싱가포르의 계약책임에 따른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제는 각각 대만의 행정원소비자보호위원회,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 한국의 한국소비자원이 규제·감독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의식이 높은 만큼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대만의 경우 인증된 소비자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소비자단체조정만이 허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반 법원이 아닌 소액손해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는 아시아 국가들 간에, 그리고 중화상권에 속해있는 대만과 싱가포르 간에도 제조물책임법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FTA, New York Convention과 같은 국제법의 발달로 인하여 근접한 국가들의 법제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국의 법제 현황의 파악이 선제되어야 한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한국의 전자 제품, 가공식품, 화장품의 수요가 높으며, 과일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이 두 국가의 소비자들의 권익 의식과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상당히 높은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에 대한 조사는 두 국가와의 교역 실무적인 면에서나 학술적인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한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제조물책임 소송의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의 제·개정 동향과 적용사례를 살피고 법제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제5판, 2005).

Jocelyn Kellam ed.,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The Federation Press (3rd ed., 2009).

Gregory L. Fowler,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aw, Aspatare Books (2004).

<논문 및 보고서>

박길준,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8. 12).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정용수 외,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2010).

Richard Epstein, “A Short History of Product Liability Law”, PointofLaw. com, Manhattan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pointoflaw.com/products/overview.php> (last visited on Oct. 1, 2013).

Franco Ferrari, Donoghue v. Stevenson’s 60th Anniversary, 1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81 (1994).

Jocelyn Kellam & Luke Nottage, “Europeanisation of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Preliminary Empirical Benchmark”, Sydney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07/30 (2007).

Catherine Tay Swee Kian, “New Developments in Duty of Care: The Singapore Approach to Negligence in Product Liability after the Slim 10 case”, Business Law Review (May 2005).

참 고 문 헌

Denis W. Stearns, “An Introduction to Product Liability Law”, Marler Clark Attorneys at Law LLP, PS, available at <http://www.marlerclark.com/pdfs/intro-product-liability-law.pdf> (last visited on Sept. 1, 2013).

詹森林, “消保法懲罰性賠償金責任之過失應否限於重大過失?台灣高等法院高雄分院九十七年上字第八一號民事判決之評析”, 月旦裁判時報 201008 (4期).

<인터넷 자료>

行政院消費者保護會, <http://www.cpc.ey.gov.tw/>

台灣消費者保護協會, <http://www.cpat.org.tw/>

中華民國消費者文教基金會, www.consumers.org.tw/

별첨

별첨1: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중문)

별첨2: 싱가포르의 상품판매법 (영문)

별첨3: 싱가포르의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영문)

별첨1: 대만의 소비자보호법 (중문)

消費者保護法

(1994년 제정, 2003년 · 2005년 개정)

第一章 總則	
第 1 條	<p>為保護消費者權益，促進國民消費生活安全，提昇國民消費生活品質，特制定本法。</p> <p>有關消費者之保護，依本法之規定，本法未規定者，適用其他法律。</p>
第 2 條	<p>本法所用名詞定義如下：</p> <p>一、消費者：指以消費為目的而為交易、使用商品或接受服務者。</p> <p>二、企業經營者：指以設計、生產、製造、輸入、經銷商品或提供服務為營業者。</p> <p>三、消費關係：指消費者與企業經營者間就商品或服務所發生之法律關係。</p> <p>四、消費爭議：指消費者與企業經營者間因商品或服務所生之爭議。</p> <p>五、消費訴訟：指因消費關係而向法院提起之訴訟。</p> <p>六、消費者保護團體：指以保護消費者為目的而依法設立登記之法人。</p> <p>七、定型化契約條款：指企業經營者為與不特定多數消費者訂立同類契約之用，所提出預先擬定之契約條款。定型化契約條款不限於書面，其以放映字幕、張貼、牌示、網際網路、或其他方法表示者，亦屬之。</p> <p>八、個別磋商條款：指契約當事人個別磋商而合意之契約條款。</p> <p>九、定型化契約：指以企業經營者提出之定型化契約條款作為契約內容之全部或一部而訂定之契約。</p> <p>一〇、郵購買賣：指企業經營者以廣播、電視、電話、傳真、型錄、報紙、雜誌、網際網路、傳單或其他類似之方</p>

	<p>法, 使消費者未能檢視商品而與企業經營者所為之買賣。</p> <p>一一、訪問買賣：指企業經營者未經邀約而在消費者之住居所或其他場所從事銷售, 所為之買賣。</p> <p>一二、分期付款：指買賣契約約定消費者支付頭期款, 餘款分期支付, 而企業經營者於收受頭期款時, 交付標的物與消費者之交易型態。</p>
<p>第 3 條</p>	<p>政府為達成本法目的, 應實施下列措施, 並應就與下列事項有關之法規及其執行情形, 定期檢討、協調、改進之：</p> <p>一、維護商品或服務之品質與安全衛生。</p> <p>二、防止商品或服務損害消費者之生命、身體、健康、財產或其他權益。</p> <p>三、確保商品或服務之標示, 符合法令規定。</p> <p>四、確保商品或服務之廣告, 符合法令規定。</p> <p>五、確保商品或服務之度量衡, 符合法令規定。</p> <p>六、促進商品或服務維持合理價格。</p> <p>七、促進商品之合理包裝。</p> <p>八、促進商品或服務之公平交易。</p> <p>九、扶植、獎助消費者保護團體。</p> <p>一〇、協調處理消費爭議。</p> <p>一一、推行消費者教育。</p> <p>一二、辦理消費者諮詢服務。</p> <p>一三、其他依消費生活之發展所必要之消費者保護措施。</p> <p>政府為達成前項之目的, 應制定相關法律。</p>
<p>第 4 條</p>	<p>企業經營者對於其提供之商品或服務, 應重視消費者之健康與安全, 並向消費者說明商品或服務之使用方法, 維護交易之公平, 提供消費者充分與正確之資訊, 及實施其他必要之消費者保護措施。</p>
<p>第 5 條</p>	<p>政府、企業經營者及消費者均應致力充實消費資訊, 提供消費者運用, 俾能採取正確合理之消費行為, 以維護其安全與權益。</p>

第 6 條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目的事業主管機關；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在縣（市）為縣（市）政府。
第 二 章 消費者權益	
	第 一 節 健康與安全保障
第 7 條	從事設計、生產、製造商品或提供服務之企業經營者，於提供商品流通進入市場，或提供服務時，應確保該商品或服務，符合當時科技或專業水準可合理期待之安全性。 商品或服務具有危害消費者生命、身體、健康、財產之可能者，應於明顯處為警告標示及緊急處理危險之方法。 企業經營者違反前二項規定，致生損害於消費者或第三人時，應負連帶賠償責任。但企業經營者能證明其無過失者，法院得減輕其賠償責任。
第 7-1 條	企業經營者主張其商品於流通進入市場，或其服務於提供時，符合當時科技或專業水準可合理期待之安全性者，就其主張之事實負舉證責任。 商品或服務不得僅因其後有較佳之商品或服務，而被視為不符合前條第一項之安全性。
第 8 條	從事經銷之企業經營者，就商品或服務所生之損害，與設計、生產、製造商品或提供服務之企業經營者連帶負賠償責任。但其對於損害之防免已盡相當之注意，或縱加以相當之注意而仍不免發生損害者，不在此限。 前項之企業經營者，改裝、分裝商品或變更服務內容者，視為前條之企業經營者。
第 9 條	輸入商品或服務之企業經營者，視為該商品之設計、生產、製造者或服務之提供者，負本法第七條之製造者責任。
第 10 條	企業經營者於有事實足認其提供之商品或服務有危害消費者安全與健康之虞時，應即回收該批商品或停止其服務。但企業經營者所為必要之處理，足以除去其危害者，不在此限。 商品或服務有危害消費者生命、身體、健康或財產之虞，而未

	於明顯處為警告標示，並附載危險之緊急處理方法者，準用前項規定。
第 10-1 條	本節所定企業經營者對消費者或第三人之損害賠償責任，不得預先約定限制或免除。
	第 二 節 定 型 化 契 約
第 11 條	企業經營者在定型化契約中所用之條款，應本平等互惠之原則。定型化契約條款如有疑義時，應為有利於消費者之解釋。
第 11-1 條	企業經營者與消費者訂立定型化契約前，應有三十日以內之合理期間，供消費者審閱全部條款內容。 違反前項規定者，其條款不構成契約之內容。但消費者得主張該條款仍構成契約之內容。 中央主管機關得選擇特定行業，參酌定型化契約條款之重要性、涉及事項之多寡及複雜程度等事項，公告定型化契約之審閱期間。
第 12 條	定型化契約中之條款違反誠信原則，對消費者顯失公平者，無效。 定型化契約中之條款有下列情形之一者，推定其顯失公平： 一、違反平等互惠原則者。 二、條款與其所排除不予適用之任意規定之立法意旨顯相矛盾者。 三、契約之主要權利或義務，因受條款之限制，致契約之目的難以達成者。
第 13 條	定型化契約條款未經記載於定型化契約中者，企業經營者應向消費者明示其內容；明示其內容顯有困難者，應以顯著之方式，公告其內容，並經消費者同意受其拘束者，該條款即為契約之內容。 前項情形，企業經營者經消費者請求，應給與定型化契約條款之影本或將該影本附為該契約之附件。

第 14 條	定型化契約條款未經記載於定型化契約中而依正常情形顯非消費者所得預見者，該條款不構成契約之內容。
第 15 條	定型化契約中之定型化契約條款牴觸個別磋商條款之約定者，其牴觸部分無效。
第 16 條	定型化契約中之定型化契約條款，全部或一部無效或不構成契約內容之一部者，除去該部分，契約亦可成立者，該契約之其他部分，仍為有效。但對當事人之一方顯失公平者，該契約全部無效。
第 17 條	中央主管機關得選擇特定行業，公告規定其定型化契約應記載或不得記載之事項。 違反前項公告之定型化契約，其定型化契約條款無效。該定型化契約之效力，依前條規定定之。 企業經營者使用定型化契約者，主管機關得隨時派員查核。
第三節 特種買賣	
第 18 條	企業經營者為郵購買賣或訪問買賣時，應將其買賣之條件、出賣人之姓名、名稱、負責人、事務所或住居所告知買受之消費者。
第 19 條	郵購或訪問買賣之消費者，對所收受之商品不願買受時，得於收受商品後七日內，退回商品或以書面通知企業經營者解除買賣契約，無須說明理由及負擔任何費用或價款。 郵購或訪問買賣違反前項規定所為之約定無效。 契約經解除者，企業經營者與消費者間關於回復原狀之約定，對於消費者較民法第二百五十九條之規定不利者，無效。
第 19-1 條	前二條規定，於以郵購買賣或訪問買賣方式所為之服務交易，準用之。
第 20 條	未經消費者要約而對之郵寄或投遞之商品，消費者不負保管義務。前項物品之寄送人，經消費者定相當期限通知取回而逾期未取回或無法通知者，視為拋棄其寄投之商品。雖未經通知，但在

	<p>寄送後逾一個月未經消費者表示承諾，而仍不取回其商品者，亦同。</p> <p>消費者得請求償還因寄送物所受之損害，及處理寄送物所支出之必要費用。</p>
第 21 條	<p>企業經營者與消費者分期付款買賣契約應以書面為之。</p> <p>前項契約書應載明下列事項：</p> <p>一、頭期款。</p> <p>二、各期價款與其他附加費用合計之總價款與現金交易價格之差額。</p> <p>三、利率。</p> <p>企業經營者未依前項規定記載利率者，其利率按現金交易價格週年利率百分之五計算之。</p> <p>企業經營者違反第二項第一款、第二款之規定者，消費者不負現金交易價格以外價款之給付義務。</p>
	<p>企業經營者違反第二項第一款、第二款之規定者，消費者不負現金交易價格以外價款之給付義務。</p>
	<p>第 四 節 消 費 資 訊 之 規 範</p>
第 22 條	<p>企業經營者應確保廣告內容之真實，其對消費者所負之義務不得低於廣告之內容。</p>
第 22-1 條	<p>企業經營者對消費者從事與信用有關之交易時，應於廣告上明示應付所有總費用之年百分率。</p> <p>前項所稱總費用之範圍及年百分率計算方式，由各目的事業主管機關定之。</p>
第 23 條	<p>刊登或報導廣告之媒體經營者明知或可得而知廣告內容與事實不符者，就消費者因信賴該廣告所受之損害與企業經營者負連帶責任。</p> <p>前項損害賠償責任，不得預先約定限制或拋棄。</p>

<p>第 24 條</p>	<p>企業經營者應依商品標示法等法令為商品或服務之標示。 輸入之商品或服務，應附中文標示及說明書，其內容不得較原產地之標示及說明書簡略。 輸入之商品或服務在原產地附有警告標示者，準用前項之規定。</p>
<p>第 25 條</p>	<p>企業經營者對消費者保證商品或服務之品質時，應主動出具書面保證書。 前項保證書應載明下列事項： 一、商品或服務之名稱、種類、數量，其有製造號碼或批號者，其製造號碼或批號。 二、保證之內容。 三、保證期間及其起算方法。 四、製造商之名稱、地址。 五、由經銷商售出者，經銷商之名稱、地址。 六、交易日期。</p>
<p>第 26 條</p>	<p>企業經營者對於所提供之商品應按其性質及交易習慣，為防震、防潮、防塵或其他保存商品所必要之包裝，以確保商品之品質與消費者之安全。但不得誇張其內容或為過大之包裝。</p>
<p>第 三 章 消費者保護團體</p>	
<p>第 27 條</p>	<p>消費者保護團體以社團法人或財團法人為限。 消費者保護團體應以保護消費者權益、推行消費者教育為宗旨。</p>
<p>第 28 條</p>	<p>消費者保護團體之任務如下： 一、商品或服務價格之調查、比較、研究、發表。 二、商品或服務品質之調查、檢驗、研究、發表。 三、商品標示及其內容之調查、比較、研究、發表。 四、消費資訊之諮詢、介紹與報導。 五、消費者保護刊物之編印發行。 六、消費者意見之調查、分析、歸納。</p>

	<p>七、接受消費者申訴，調解消費爭議。</p> <p>八、處理消費爭議，提起消費訴訟。</p> <p>九、建議政府採取適當之消費者保護立法或行政措施。</p> <p>一〇、建議企業經營者採取適當之消費者保護措施。</p> <p>一一、其他有關消費者權益之保護事項。</p>
第 29 條	<p>消費者保護團體為從事商品或服務檢驗，應設置與檢驗項目有關之檢驗設備或委託設有與檢驗項目有關之檢驗設備之機關、團體檢驗之。</p> <p>執行檢驗人員應製作檢驗紀錄，記載取樣、使用之檢驗設備、檢驗方法、經過及結果，提出於該消費者保護團體。</p>
第 30 條	<p>政府對於消費者保護之立法或行政措施，應徵詢消費者保護團體、相關行業、學者專家之意見。</p>
第 31 條	<p>消費者保護團體為商品或服務之調查、檢驗時，得請求政府予以必要之協助。</p>
第 32 條	<p>消費者保護團體辦理消費者保護工作成績優良者，主管機關得予以財務上之獎助。</p>
第 四 章 行政監督	
第 33 條	<p>直轄市或縣（市）政府認為企業經營者提供之商品或服務有損害消費者生命、身體、健康或財產之虞者，應即進行調查。於調查完成後，得公開其經過及結果。</p> <p>前項人員為調查時，應出示有關證件，其調查得依下列方式進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向企業經營者或關係人查詢。 二、通知企業經營者或關係人到場陳述意見。 三、通知企業經營者提出資料證明該商品或服務對於消費者生命、身體、健康或財產無損害之虞。 四、派員前往企業經營者之事務所、營業所或其他有關場所進行調查。 五、必要時，得就地抽樣商品，加以檢驗。

第 34 條	直轄市或縣（市）政府於調查時，對於可為證據之物，得聲請檢察官扣押之。 前項扣押，準用刑事訴訟法關於扣押之規定。
第 35 條	直轄市或縣（市）主管機關辦理檢驗，得委託設有與檢驗項目有關之檢驗設備之消費者保護團體、職業團體或其他有關公私機構或團體辦理之。
第 36 條	直轄市或縣（市）政府對於企業經營者提供之商品或服務，經第三十三條之調查，認為確有損害消費者生命、身體、健康或財產，或確有損害之虞者，應命其限期改善、回收或銷燬，必要時並得命企業經營者立即停止該商品之設計、生產、製造、加工、輸入、經銷或服務之提供，或採取其他必要措施。
第 37 條	直轄市或縣（市）政府於企業經營者提供之商品或服務，對消費者已發生重大損害或有發生重大損害之虞，而情況危急時，除為前條之處置外，應即在大眾傳播媒體公告企業經營者之名稱、地址、商品、服務、或為其他必要之處置。
第 38 條	中央主管機關認為必要時，亦得為前五條規定之措施。
第 39 條	消費者保護委員會、直轄市、縣（市）政府各應置消費者保護官若干名。 消費者保護官之任用及職掌，由行政院定之。
第 40 條	行政院為研擬及審議消費者保護基本政策與監督其實施，設消費者保護委員會。 消費者保護委員會以行政院副院長為主任委員，有關部會首長、全國性消費者保護團體代表、全國性企業經營者代表及學者、專家為委員。其組織規程由行政院定之。
第 41 條	消費者保護委員會之職掌如下： 一、消費者保護基本政策及措施之研擬及審議。 二、消費者保護計畫之研擬、修訂及執行成果檢討。 三、消費者保護方案之審議及其執行之推動、連繫與考核。

	<p>四、國內外消費者保護趨勢及其與經濟社會建設有關問題之研究。</p> <p>五、消費者保護之教育宣導、消費資訊之蒐集及提供。</p> <p>六、各部會局署關於消費者保護政策、措施及主管機關之協調事項。</p> <p>七、監督消費者保護主管機關及指揮消費者保護官行使職權。</p> <p>消費者保護委員會應將消費者保護之執行結果及有關資料定期公告。</p>
第 42 條	<p>直轄市、縣（市）政府應設消費者服務中心，辦理消費者之諮詢服務、教育宣導、申訴等事項。</p> <p>直轄市、縣（市）政府消費者服務中心得於轄區內設分中心。</p>
第 五 章 消費爭議之處理	
	第 一 節 申訴與調解
第 43 條	<p>消費者與企業經營者因商品或服務發生消費爭議時，消費者得向企業經營者、消費者保護團體或消費者服務中心或其分中心申訴。</p> <p>企業經營者對於消費者之申訴，應於申訴之日起十五日內妥適處理之。</p> <p>消費者依第一項申訴，未獲妥適處理時，得向直轄市、縣（市）政府消費者保護官申訴。</p>
第 44 條	<p>消費者依前條申訴未能獲得妥適處理時，得向直轄市或縣（市）消費爭議調解委員會申請調解。</p>
第 44-1 條	<p>前條之消費爭議調解事件之受理及程序進行等事項，由消費者保護委員會定之。</p>
第 45 條	<p>直轄市、縣（市）政府應設消費爭議調解委員會，置委員七至十五名。</p> <p>前項委員以直轄市、縣（市）政府代表、消費者保護官、消費者保護團體代表、企業經營者所屬或相關職業團體代表充任之，以消費者保護官為主席，其組織另定之。</p>

<p>第 45-1 條</p>	<p>調解程序，於直轄市、縣（市）政府或其他適當之處所行之，其程序得不公開。 調解委員、列席協同調解人及其他經辦調解事務之人，對於調解事件之內容，除已公開之事項外，應保守秘密。</p>
<p>第 45-2 條</p>	<p>關於消費爭議之調解，當事人不能合意但已甚接近者，調解委員得斟酌一切情形，求兩造利益之平衡，於不違反兩造當事人之主要意思範圍內，依職權提出解決事件之方案，並送達於當事人。 前項方案，應經參與調解委員過半數之同意，並記載第四十五條之三所定異議期間及未於法定期間提出異議之法律效果。</p>
<p>第 45-3 條</p>	<p>當事人對於前條所定之方案，得於送達後十日之不變期間內，提出異議。 於前項期間內提出異議者，視為調解不成立；其未於前項期間內提出異議者，視為已依該方案成立調解。 第一項之異議，消費爭議調解委員會應通知他方當事人。</p>
<p>第 45-4 條</p>	<p>關於小額消費爭議，當事人之一方無正當理由，不於調解期日到場者，調解委員得審酌情形，依到場當事人一造之請求或依職權提出解決方案，並送達於當事人。 前項之方案，應經全體調解委員過半數之同意，並記載第四十五條之三所定異議期間及未於法定期間提出異議之法律效果。 第一項之送達，不適用公示送達之規定。 第一項小額消費爭議之額度，由行政院定之。</p>
<p>第 45-5 條</p>	<p>當事人對前條之方案，得於送達後十日之不變期間內，提出異議；未於異議期間內提出異議者，視為已依該方案成立調解。 當事人於異議期間提出異議，經調解委員另定調解期日，無正當理由不到場者，視為依該方案成立調解。</p>
<p>第 46 條</p>	<p>調解成立者應作成調解書。 前項調解書之作成及效力，準用鄉鎮市調解條例第二十二條至第二十六條之規定。</p>

	第 二 節 消 費 訴 訟
第 47 條	消費訴訟，得由消費關係發生地之法院管轄。
第 48 條	<p>高等法院以下各級法院及其分院得設立消費專庭或指定專人審理消費訴訟事件。</p> <p>法院為企業經營者敗訴之判決時，得依職權宣告為減免擔保之假執行。</p>
第 49 條	<p>消費者保護團體許可設立三年以上，申請消費者保護委員會評定優良，置有消費者保護專門人員，且合於下列要件之一，並經消費者保護官同意者，得以自己之名義，提起第五十條消費者損害賠償訴訟或第五十三條不作為訴訟：</p> <p>一、社員人數五百人以上之社團法人。</p> <p>二、登記財產總額新臺幣一千萬元以上之財團法人。</p> <p>消費者保護團體依前項規定提起訴訟者，應委任律師代理訴訟。受委任之律師，就該訴訟，除得請求預付或償還必要之費用外，不得請求報酬。</p> <p>消費者保護團體關於其提起之第一項訴訟，有不法行為者，許可設立之主管機關應廢止其許可。</p> <p>消費者保護團體評定辦法，由消費者保護委員會另定之。</p>
第 50 條	<p>消費者保護團體對於同一之原因事件，致使眾多消費者受害時，得受讓二十人以上消費者損害賠償請求權後，以自己名義，提起訴訟。消費者得於言詞辯論終結前，終止讓與損害賠償請求權，並通知法院。</p> <p>前項訴訟，因部分消費者終止讓與損害賠償請求權，致人數不足二十人者，不影響其實施訴訟之權能。</p> <p>第一項讓與之損害賠償請求權，包括民法第一百九十四條、第一百九十五條第一項非財產上之損害。</p> <p>前項關於消費者損害賠償請求權之時效利益，應依讓與之消費者單獨個別計算。</p>

	<p>消費者保護團體受讓第三項所定請求權後，應將訴訟結果所得之賠償，扣除訴訟及依前條第二項規定支付予律師之必要費用後，交付該讓與請求權之消費者。</p> <p>消費者保護團體就第一項訴訟，不得向消費者請求報酬。</p>
第 51 條	<p>依本法所提之訴訟，因企業經營者之故意所致之損害，消費者得請求損害額三倍以下之懲罰性賠償金；但因過失所致之損害，得請求損害額一倍以下之懲罰性賠償金。</p>
第 52 條	<p>消費者保護團體以自己之名義提起第五十條訴訟，其標的價額超過新臺幣六十萬元者，超過部分免繳裁判費。</p>
第 53 條	<p>消費者保護官或消費者保護團體，就企業經營者重大違反本法有關保護消費者規定之行為，得向法院訴請停止或禁止之。</p> <p>前項訴訟免繳裁判費。</p>
第 54 條	<p>因同一消費關係而被害之多數人，依民事訴訟法第四十一條之規定，選定一人或數人起訴請求損害賠償者，法院得徵求原被選定人之同意後公告曉示，其他之被害人得於一定之期間內以書狀表明被害之事實、證據及應受判決事項之聲明、併案請求賠償。其請求之人，視為已依民事訴訟法第四十一條為選定。</p> <p>前項併案請求之書狀，應以繕本送達於兩造。</p> <p>第一項之期間，至少應有十日，公告應黏貼於法院牌示處，並登載新聞紙，其費用由國庫墊付。</p>
第 55 條	<p>民事訴訟法第四十八條、第四十九條之規定，於依前條為訴訟行為者，準用之。</p>
第 六 章 罰 則	
第 56 條	<p>違反第二十四條、第二十五條或第二十六條規定之一者，經主管機關通知改正而逾期不改正者，處新臺幣二萬元以上二十萬元以下罰鍰。</p>
第 57 條	<p>企業經營者拒絕、規避或阻撓主管機關依第十七條第三項、第三十三條或第三十八條規定所為之調查者，處新臺幣三萬元以上三十萬元以下罰鍰，並得連續處罰。</p>

第 58 條	企業經營者違反主管機關依第三十六條或第三十八條規定所為之命令者，處新臺幣六萬元以上一百五十萬元以下罰鍰，並得連續處罰。
第 59 條	企業經營者有第三十七條規定之情形者，主管機關除依該條及第三十六條之規定處置外，並得對其處新臺幣十五萬元以上一百五十萬元以下罰鍰。
第 60 條	企業經營者違反本法規定情節重大，報經中央主管機關或消費者保護委員會核准者，得命停止營業或勒令歇業。
第 61 條	依本法應予處罰者，其他法律有較重處罰之規定時，從其規定；涉及刑事責任者，並應即移送偵查。
第 62 條	本法所定之罰鍰，由主管機關處罰，經限期繳納後，屆期仍未繳納者，依法移送強制執行。
第 七 章 附 則	
第 63 條	本法施行細則，由行政院定之。
第 64 條	本法自公布日施行。

별첨2: 싱가포르의 상품판매법 (영문)

Sale of Goods Act

(CHAPTER 393)

(1979년 제정, 1994년 1월 · 1994년 5월 · 1996년 · 1999년 개정)

(PART I omitted)	
PART II Formation of the Contract	
(Articles 1~13 omitted)	
14	<p>Implied terms about quality or fitness</p> <p>(1) Except as provided by this section and section 15 and subject to any other enactment, there is no implied condition or warranty about the quality or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of goods supplied under a contract of sale.</p> <p>(2)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there is an implied con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of satisfactory quality.</p> <p>(2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taking account of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price (if relevant) and all the other relevant circumstances.</p> <p>(2B)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quality of goods includes their state and condition and the following (among others) are in appropriate cases aspects of the quality of goo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fitness for all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kind in question are commonly supplied; (b) appearance and finish;

- (c) freedom from minor defects;
- (d) safety; and
- (e) durability.

(2C) The condition implied by subsection (2) does not extend to any matter making the quality of goods unsatisfactory –

- (a) which is specifically drawn to the buyer's attention before the contract is made;
- (b) where the buyer examines the goods before the contract is made, which that examination ought to reveal; or
- (c)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sale by sample, which would have been apparent on a reasonable examination of the sample.

(3)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d the buyer, expressly or by implication, makes known –

- (a) to the seller; or
- (b) where the purchase price or part of it is payable by instalments and the goods were previously sold by a credit-broker to the seller, to that credit-broker,

any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being bought, there is an implied con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reasonably fit for that purpose, whether or not that is a purpose for which such goods are commonly supplied,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oes not rely, or that it i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kill or judgment of the seller or credit-broker.

(4) An implied condition or warranty about qua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may be annexed to a contract of sale by usage.

(5)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apply to a sale by a person who in the course of a business is acting as agent for another as they apply to a sale by a principal in the course of a business,

	<p>except where that other is not selling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d either the buyer knows that fact or reasonable steps are taken to bring it to the notice of the buyer before the contract is made.</p> <p>(6) (Deleted by Act 43/96).</p> <p>(7) Paragraph 5 of the Schedule applies in relation to a contract made on or after 18th May 1973 and before 19th May 1985, and paragraph 6 in relation to one made before 18th May 1973.</p>
	(Articles 15 & 15A omitted)
(PART III omitted)	
PART IV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s 27~33 omitted)
34	<p>Buyer's right of examining goods</p> <p>Unless otherwise agreed, when the seller tenders delivery of the goods to the buyer, he is bound on request to afford the buyer a reasonable opportunity of examining the good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sale by sample, of comparing the bulk with the sample.</p>
	(Articles 34~37 omitted)
(PART V omitted)	
PART VI Actions for Breach of the Contract	
	(Articles 49~52 omitted)
	<p>Remedy for breach of warranty</p> <p>(1)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or where the buyer elects (or is compelled) to treat any breach of a condition on the part of the seller as a breach of warranty, the buyer is not by reason only of such breach of warranty entitled to reject the goods; but he may –</p>

	<p>(a) set up against the seller the breach of warranty in diminution or extinction of the price; or</p> <p>(b) maintain an action against the seller for damages for the breach of warranty.</p> <p>(2) The measure of damages for breach of warranty is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from the breach of warranty.</p> <p>(3) In the case of breach of warranty of quality, such loss is prima fac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 goods at the time of delivery to the buyer and the value they would have had if they had fulfilled the warranty.</p> <p>(4) The fact that the buyer has set up the breach of warranty in diminution or extinction of the price does not prevent him from maintaining an action for the same breach of warranty if he has suffered further damage.</p>
	<p>(Article 54 omitted)</p>
<p>PART VII Supplementary</p>	
<p>55</p>	<p>Exclusion of implied terms</p> <p>(1) Where a right, duty or liability would arise under a contract of sale of goods by implication of law, it may (subject to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Cap. 396)) be negated or varied by express agreement, or by the course of dealing between the parties, or by such usage as binds both parties to the contract.</p> <p>(2) An express condition or warranty does not negative a condition or warranty implied by this Act unless inconsistent with it.</p> <p>(3) Paragraph 9 of the Schedule applies in relation to a contract</p>

별첨2: 싱가포르의 상품판매법 (영문)

	made on or after 18th May 1973 and before 1st February 1978, and paragraph 10 in relation to one made before 18th May 1973.
	(Articles 26~63 omitted)

별첨3: 싱가포르의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영문)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CHAPTER 52A)

(2003년 제정, 2004년 · 2008년 · 2009년 · 2012년 개정)

PART I Preliminary	
1	<p>Short Title</p> <p>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p>
2	<p>Interpretation</p> <p>(1)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p> <p>“Chairman” means the Chairman of the Injunction Proposals Review Panel appointed under section 10;</p> <p>“consumer” means an individual who, otherwise than exclusively in the course of business –</p> <p style="padding-left: 40px;">(a) receives or has the right to receive goods or services from a supplier; or</p> <p style="padding-left: 40px;">(b) has a legal obligation to pay a supplier for goods or services that have been or are to be supplied to another individual;</p> <p>“consumer transaction” means –</p> <p style="padding-left: 40px;">(a)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by a supplier to a consumer as a result of a purchase, lease, gift, contest or other arrangement; or</p> <p style="padding-left: 40px;">(b) an agreement between a supplier and a consumer, as a result of a purchase, lease, gift, contest or other arrangement, in which the supplier is to supply goods or services to the consumer or to another consumer specified in the agreement,</p> <p>but does not include any transaction specified in the First Schedule;</p>

“financial product” includes any arrangement, transaction or contract regulated, or supplied by any person regulated, under –

- (a) any written law administered by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b) the Commodity Trading Act (Cap. 48A); or
- (c) such other written law as the Minister may by order prescribe;

“financial services” includes any services regulated, or supplied by any person regulated, under –

- (a) any written law administered by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b) the Commodity Trading Act (Cap. 48A); or
- (c) such other written law as the Minister may by order prescribe;

“flat” means a horizontal stratum of any building or part thereof, whether the stratum or part is on one or more levels or is partially or wholly below the surface of the ground;

“goods” means –

- (a) any personal property,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includes –
 - (i) chattels that are attached or intended to be attached to real property on or after delivery; and
 - (ii) financial products and credit, including credit extended solely on the security of land;
- (b) any residential property; or
- (c) a voucher;

“hire-purchase agreeme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Hire-Purchase Act (Cap. 125);

“material fact” means any information that a supplier knows or ought reasonably to know would affect the decision of a consumer to enter into a consumer transaction;

“motor vehic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2 of the Road Traffic Act (Cap. 276);

“motor vehicle dealer” means a supplier of motor vehicles;

“motor vehicle sale contract” means a contract between a consumer and a motor vehicle dealer for the sale of a motor vehicle to the consumer;

“Panel” means the Injunction Proposals Review Panel appointed under section 10;

“residential property” means any house, flat or other premises which is permitted to be used pursuant to any written law as a dwelling-house and any such house, flat or other premises which is in the course of being constructed;

“services” includes —

- (a) a service offered or provided that involves the addition to or maintenance, repair or alteration of goods or any residential property;
- (b) a membership in any club or organisation if the club or organisation is a business formed to make a profit for its owners;
- (c) the right to use time share accommodation under a time share contract; and
- (d) financial services;

“Small Claims Tribunal” means a Small Claims Tribunal constituted under section 4 of the Subordinate Courts Act (Cap. 321);

“specified body” means any person or body appointed under section 8(10);

“specified dispute resolution scheme” means, in respec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any consumer transaction, any dispute resolution scheme specifi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7(10) by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20(2)(k) in respect of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a class of consumer transactions to which that consumer transaction belongs;

“supplier” means a person who, in the course of the person’s business —

- (a) provides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 (b) manufactures, assembles or produces goods;
- (c) promotes the us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or
- (d) receives or is entitled to receive money or other consideration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and includes any employee or agent of the person, and the word “supply”, with its grammatical variations and cognate expressions, shall have corresponding meanings;

“time share accommodation” means any living accommodation, in Singapore or elsewhere, used or intended to be used (wholly or partly) for leisure purposes by a class of persons all of whom have rights to use, or participate in arrangements under which they may use, that accommodation or accommodation within a pool of accommodation to which that accommodation belongs;

“time share contract” means a contract which confers or purports to confer on an individual time share rights that are exercisable during a period of not less than 3 years;

“time share related contract” means a contract to assist a consumer to dispose of his time share rights conferred under a time share contract;

“time share rights” means rights to use time share accommodation for a specified or ascertainable period, but does not include rights under a contract of employment or an insurance policy;

“unfair practice” means an unfair practic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

“voucher” means any document that purports to give the holder of the document the right to obtain goods or a service or the right to obtain goods or a service at a discounted or reduced price.

(2) An individual who holds himself out as acting exclusively in the course of business shall be treated as acting exclusively in the course of business for the purpose of the definition of “consumer” in subsection (1).

	<p>(3)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s of “financial product” and “financial services” in subsection (1), a reference to a person regulated under a written law shall include a person exempted from being licensed, approved or regulated under that written law.</p>
<p>PART II Unfair Practices</p>	
<p>3</p>	<p>Application of Part</p> <p>This Part shall not apply unles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supplier or consumer is resident in Singapore; or (b) the offer or acceptance relating to the consumer transaction is made in or is sent from Singapore.
<p>4</p>	<p>Meaning of unfair practice</p> <p>It is an unfair practice for a supplier, in relation to a consumer transaction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o do or say anything, or omit to do or say anything, if as a result a consumer might reasonably be deceived or misled; (b) to make a false claim; (c) to take advantage of a consumer if the supplier knows or ought reasonably to know that the consum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is not in a position to protect his own interests; or (ii) is not reasonably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 nature, language or effect of the transaction or any matter related to the transaction; or (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paragraphs (a), (b) and (c), to do anything specified in the Second Schedule.
<p>5</p>	<p>Circumstances surrounding unfair practice</p> <p>(1) An unfair practice may occur before, during or after a consumer transaction.</p> <p>(2) An unfair practice may consist of a single act or omission.</p> <p>(3)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erson has engaged in an unfair</p>

	<p>practice –</p> <p>(a)the reasonableness of the actions of that person in those circumstances is to be considered; and</p> <p>(b)an act or omission by an employee or agent of a person is deemed also to be an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if the act or omission occurred in the course of –</p> <p>(i)the employee’s employment with the person; or</p> <p>(ii)the agent exercising the powers or performing the duties on behalf of the person within the scope of the agent’s actual or apparent authority.</p>
<p>6</p>	<p>Consumer’s right to sue for unfair practice</p> <p>(1) A consumer who has entered a consumer transaction involving an unfair practice may commence an action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gainst the supplier.</p> <p>(2) The right to commence an ac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apply where –</p> <p>(a)the amount of the claim exceeds the prescribed limit; or</p> <p>(b)there is no claim for money, and the remedy or relief sought in the action is in respect of a subject-matter the value of which exceeds the prescribed limit.</p> <p>(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a), where the amount claimed consists of a balance not exceeding the prescribed limit after set-off of any amount claimed or recoverable by the supplier from the consumer, being a set-off admitted by the consumer in the particulars of his claim, the amount of the claim shall not be taken to exceed the prescribed limit.</p> <p>(4)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b), where the subject-matter in an action is a residential property, its value shall be –</p> <p>(a)the annual value of the immovable property appearing in the</p>

Valuation List prepared under section 10 of the Property Tax Act (Cap. 254);

(b) the annual rent, or 12 times the monthly rent, payable by the tenant in respect of the immovable property (if this value is lower than the value in paragraph (a)); or

(c) if the annual value, annual rent or monthly rent cannot be ascertained, one-tenth of the last transacted price.

(5) Where the amount of a claim in an action under subsection (1) exceeds the prescribed limit, the consumer may abandon the excess and thereafter –

(a) the amount of the claim shall be deemed to be within the prescribed limit;

(b) the consumer shall not recover in that action an amount exceeding the prescribed limit; and

(c) an order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action shall be in full discharge of all demands in respect of that cause of action.

(6) The prescribed limit referred to in this section shall be \$30,000 or such other amount as the Minister may, by order in the Gazette, prescribe.

(7) Any party to an action in a court under subsection (1) may, at any time, apply to that court to stay the proceedings so far as the proceedings relate to an unfair practice in respect of which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under section 9 against the same supplier.

(8) The court to which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7) has been made may,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determination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 9 will be material to the action under subsection (1), make an order, upon such terms as the court thinks fit, staying the proceedings so far as the proceedings relate to that unfair practice.

	<p>(9) Where no party to the proceedings has taken any further step in the proceedings for a period of 2 or more years after an order staying the proceedings has been made, the court may, on its own motion, make an order discontinuing the proceeding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ny of the parties to apply for the discontinued proceedings to be reinstated.</p>
	<p>(Articles 7~12omitted)</p>
<p>PART III Additional Consumer Rights in Respect of Non-Conforming Goods</p>	
<p>12A</p>	<p>Interpretation of this Part</p> <p>(1) In this Par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p> <p>“applicable contract” mean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contract of sale of goods; (b)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goods; or (c) a hire-purchase agreement; <p>“contract for the transfer of good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upply of Goods Act (Cap. 394);</p> <p>“contract of sale of good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ale of Goods Act (Cap. 393);</p> <p>“delivery”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ale of Goods Act;</p> <p>“good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n relation to a sale,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ale of Goods Act; and (b) in relation to any other transfer,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upply of Goods Act; <p>“hire-purchase agreeme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Hire-Purchase Act (Cap. 125);</p> <p>“repair” means, in cases where there is a lack of conformity in goods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4), to bring the goods into conformity with the contract;</p> <p>“transfere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n relation to a contract of sale of goods, means the buyer within the meaning of the Sale of Goods Act;

(b)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good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upply of Goods Act; and

(c) in relation to a hire-purchase agreement, means the hirer within the meaning of the Hire-Purchase Act;

“transferor” –

(a) in relation to a contract of sale of goods, means the seller within the meaning of the Sale of Goods Act;

(b) in relation to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goods,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Supply of Goods Act; and

(c) in relation to a hire-purchase agreement, means the owner within the meaning of the Hire-Purchase Act.

(2) References in this Part to dealing as consumer are to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Part I of 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Cap. 396).

(3)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it is for a transferor claiming that the transferee does not deal as consumer to show that he does not.

(4)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goods do not conform to –

(a)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f there is, in relation to the goods, a breach of an express term of the contract or a term implied by section 13, 14 or 15 of the Sale of Goods Act;

(b) a contract for the supply or transfer of goods if there is, in relation to the goods, a breach of an express term of the contract or a term implied by section 3, 4 or 5 of the Supply of Goods Act; and

(c) a hire-purchase agreement if there is, in relation to the goods, a breach of an express term of the contract or a term implied by section 6A, 6B or 6C of the Hire-Purchase Act.

(5)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not apply to this Part:

	<p>(a) the definitions of “consumer” and “goods” in section 2(1);</p> <p>(b) section 2(2); and</p> <p>(c) the provisions in Part IV.</p>
12B	<p>Application of this Part</p> <p>(1) This Part applies if –</p> <p>(a) the transferee deals as consumer;</p> <p>(b) the goods do not conform to the applicable contract at the time of delivery; and</p> <p>(c) the contract was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commencement of section 6 of the 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mendment) Act 2012.</p> <p>(2) If this section applies, the transferee has the right –</p> <p>(a)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C, to require the transferor to repair or replace the goods; or</p> <p>(b)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D –</p> <p>(i) to require the transferor to reduce the amount to be paid for the transfer by the transferee by an appropriate amount; or</p> <p>(ii) to rescind the contract with regard to the goods in question.</p> <p>(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b), goods which do not conform to the applicable contract at any time within the period of 6 months start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delivered to the transferee must be taken not to have so conformed at that date.</p> <p>(4) Subsection (3) does not apply if –</p> <p>(a) it is established that the goods did so conform at that date; or</p> <p>(b) its applic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goods or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p>
12C	<p>Repair or replacement of goods</p> <p>(1) If section 12B applies, the transferee may require the transferor to –</p> <p>(a) repair the goods; or</p> <p>(b) replace the goods.</p>

- (2) If the transferee requires the transferor to repair or replace the goods, the transferor must –
- (a) repair or, as the case may be, replace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without causing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transferee; and
 - (b) bear any necessary costs incurred in doing so (including in particular the cost of any labour, materials or postage).
- (3) The transferee must not require the transferor to repair or, as the case may be, replace the goods if that remedy is –
- (a) impossible;
 - (b) disproportionate in comparison to the other of those remedies; or
 - (c) disproportionate in comparison to an appropriate reduction in the amount to be paid for the transfer under paragraph (a), or rescission under paragraph (b), of section 12D(1).
- (4) One remedy is disproportionate in comparison to the other if the one imposes costs on the transferor which, in comparison to those imposed on him by the other, are un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
- (a) the value which the goods would have if they conformed to the applicable contract;
 - (b) the significanc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contract; and
 - (c) whether the other remedy could be effected without causing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transferee.
- (5) Any question as to what is a reasonable time or significant inconvenience is to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
- (a) the nature of the goods; and
 - (b) the purpose for which the goods were acquired.

12D	<p>Reduction in amount to be paid or rescission of contract</p> <p>(1) If section 12B applies, the transferee may –</p> <p>(a) require the transferor to reduce the amount to be paid for the transfer of the goods in question to the transferee by an appropriate amount; or</p> <p>(b) rescind the contract with regard to those goods, if the condition in subsection (2) is satisfied.</p> <p>(2) The condition is that –</p> <p>(a) by virtue of section 12C(3) the transferee may require neither repair nor replacement of the goods; or</p> <p>(b) the transferee has required the transferor to repair or replace the goods, but the transferor is in breach of the requirement of section 12C(2)(a) to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without causing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transferee.</p> <p>(3)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if the transferee rescinds the contract, any reimbursement to the transferee may be reduced to take account of the use he has had of the goods since they were delivered to him.</p>
12E	<p>Relation to other remedies, etc.</p> <p>(1) If the transferee requires the transferor to repair or replace the goods, the transferee must not act under subsection (2) until he has given the transferor a reasonable time in which to repair or replace (as the case may be) the goods.</p> <p>(2) The transferee acts under this subsection if –</p> <p>(a) he rejects the goods and terminates the contract for breach of condition; or</p> <p>(b) he requires the goods to be repaired or replaced (as the case may be).</p>

	(Article 12F omitted)
PART IV General	
13	<p>No contracting out</p> <p>(1)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prevail notwithstanding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and any term contained in a contract is void,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p> <p>(2) Any waiver or release given of any right, benefit or protection conferred under this Act shall be void.</p> <p>(3) Subsections (1) and (2) shall not apply to any release made by a person in settlement of a dispute.</p>
	(Articles 14~20 omitted)
	(Schedules omitted)